

의안번호	2218798
의 퇴 인	장종태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C2474

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아동사망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2억 6,200만원(연평균 2억 5,24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아동사망 실태조사 실시 (안 제5조)	600			600		1,200	240
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6조)	50					50	10
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· 운영(안 제20조제1항)	2.4	2.4	2.4	2.4	2.4	12.0	2.4
추가재정소요	652.4	2.4	2.4	602.4	2.4	1,262.0	252.4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	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7조(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)	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8조(국가아동사망 검토위원회의 설치)	국내에서 사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검토하여 사망원인 분석, 예방대책 제시, 정책 반영 및 이행 여부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함	의무규정
5	안 제16조(사무국의 설치)	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	의무규정
6	안 제18조(국가아동 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	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정보를 입력·저장·관리 하기 위한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9조(아동사망 검토센터)	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설치·운영함	의무규정
8	안 제20조(지역아동 사망검토위원회 설치·운영) 제1항	시·도지사는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21조(지역아동 사망검토위원회의 구성) 제3항	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, 사무국장·상담전문가 및 보조인력 등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○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	안 제7조(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)	—	○ 기존 예산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4	안 제8조(국가아동사망 검토위원회의 설치)	×	○ 안 제9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,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구체적인 직급 및 호봉 등을 알 수 없고,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5	안 제16조(사무국의 설치)	×	○ 안 제16조제5항은 사무국의 조직·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사무국의 조직 규모 및 인적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6	안 제18조(국가아동 사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	×	○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비 등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할 정보의 양과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7	안 제19조(아동사망 검토센터)	×	○ 안 제19조제3항은 아동사망검토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센터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음
8	안 제20조(지역아동 사망검토위원회 설치· 운영) 제1항	○	○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9	안 제20조(지역아동 사망검토위원회 설치· 운영) 제3항	×	○ 개정안은 사무국의 설치를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결정할 재량사안으로 두고 있고, 안 제20조제4항은 사무국의 설치·운영과 사무국 종사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무국을 설치할 시·도의 수와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안 제5조·제6조·제20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아동사망 실태조사 실시(안 제5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의 “2026년 아동종합실태조사”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3년주기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2026년 1월 해당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함
 - 제안요청서에 기입된 소요예산은 6억 1,800만원
 - 본 추계에서는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3년 주기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12억원으로 추계

[표 2] 아동사망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아동사망 실태조사 실시 (안 제5조)	600	-	-	600	-	1,200	2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 주기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교육부가 2021년 수행한 “보호대상 아동·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교육부는 아동·청소년 보호체계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하여 2021년 “보호대상 아동·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연구” 용역(4,545만원 소요)을 실시함
- 본 추계에서는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에 교육부의 유사 사례와 유사한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추계결과, 5년 주기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6조)	50	-	-	-	-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0조제1항)

- 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별 최대 인원(8인)이 모두 위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안 제21조제1항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시·도지사의 위촉을 거쳐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서울특별시의 2026년 예산서에 따르면, 서울특별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 1인당 15만원의 수당을 설정하였고, 연 2회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함

- 본 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산을 참고하여 시·도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가 각각 8인으로 구성되며,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회의마다 위원 1인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시·도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,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위원 수(명)	8	8	8	8	8	-	-
회의 횟수(회)	2	2	2	2	2	-	-
회의수당 단가(만원)	15	15	15	15	15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2.4	2.4	2.4	2.4	2.4	12	2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